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20. 9. 29.>

[V] 사회적협동조합
[ ]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수입 · 지출 예산서
[ ] 이종협동조합연합회

회계연도 : 000년도

조직 개요

조합명, 주소, 출자금만 적으면 됩니다.

조합명(연합회명) 정관상 명칭과 띄어쓰기까지 동일하게 기입)		업종(표준산업분류번호)
설립 연월일		업태
인가번호		사업자등록번호
주소	주사무소 '강원도'부터 도로명 주소 기입	
	제1 지사무소	
	제	
출자금 출자금액 기입 백만원		
주 사업 유형 *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	[ ]지역사업형 [ ]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[ ]취약계층 고용형 [ ]위탁사업형 [ ]기타 공익증진형	

*선택하여 체크

수입 (단위:원)				지출 (단위: 원)			
구분		금액	구성비(%)	구분		금액	구성비(%)
주 사업	○○사업			주 사업	○○사업		
	〃				〃		
	〃				〃		
	〃				〃		
기타사업	○○사업			기타사업	○○사업		
	〃				〃		
	〃				〃		
사업비 합계				사업비 합계			
사업외 수입	이자수익			경상비 (판매비와 관리비)	인건비		
	후원금 등				취약계층 인건비		
	〃				운영비 등		
	〃				〃		
출자금				사업외 비용	이자비용		
차입금					잡손실 등		
〃					〃		
〃				출자금 반환			
〃				차입금 상환			
〃				예비비 등			
합계				합계			

*정관 상의 사업명 그대로 기재

*직원고용계획이 있을경우 작성

*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같아야 함.

*수입합계에서 지출합계를 뺀 잔액을 예비비등에 넣어 수입 지출의 합계를 맞춥니다.

작성방법

1.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(연합회명), 주소,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2.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.
3.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구분, 금액, 구성비는 주 사업 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4. 사회적협동조합이 「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% 이상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5. 주 사업 및 기타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사업명에 준해 작성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